

보도시점

2023.10.31.(화)
(회의 종료 후 별도공지)

배포 2023.10.31.(화) 08:00

안전한 일상을 위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선 추진

-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

-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및 스토킹 등 신종·복합 범죄 피해 대응 강화
- 그루밍 범죄 대상 확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특정성별영향평가 등 추진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1일(화)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회의는 스토킹, 성폭력 등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종·복합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에 따라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원스톱 지원) 해바라기센터('23년 39개소→'24년 4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23년 18개소→'24년 19개소),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 ('23년 25개소→'24년 38개소)을 확대한다.
- (스토킹·교제폭력)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확대('23년 6개소→'24년 17개소),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

-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한다.
- (아동·청소년 보호) ‘환심형(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디지털 성범죄)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연계로 피해촬영물의 효율적 삭제를 지원하고,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 * 해외 IT기업 등의 디지털 범죄의 증거 보존 등을 통한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 가능
- (전달체계)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23년 2개소→'24년 5개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23년 30개소→'24년 55개소)를 확대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만20세→만24세)을 추진하며,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을 신설(1인당 250만원)한다.
- (기반 구축, 부처협업)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의 시간, 방식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 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을 추진한다.

2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 2022년 시행계획 중 성과목표를 수립한 360개 과제 중 성과목표 100% 이상 달성 과제는 80.2%(289개)로 전년(79.6%) 대비 0.6%포인트(p) 향상되었다.
 - * (중앙) 100%이상 목표 달성 117개(85.4%) (지자체) 100%이상 목표 달성 172개(77.1%)
- 2022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스토킹·가정폭력)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된 경우 3년 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신청도 제한**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2.12월)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22.8월)

- (디지털 성범죄) 목욕실, 화장실 등에서의 개인영상 촬영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원정보 삭제를 위해 구글, 유튜브 뿐 아니라 틱톡, 텀블러 등까지 해외 협력 사업자를 확대하였다.
-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무작위(랜덤)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 등의 불건전 정보 차단 및 온라인 성매매 사범 집중 단속 실시, 성매매 위기 노출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다.

(방심위) 랜덤채팅앱 등 성매매 정보 시정요구 : ('21년) 9,100건 → ('22년) 16,795건
 (경찰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의자 : ('22년) 209건(394명) 검거, 재영업 차단(35건)
 (여가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지원건수 : ('21년) 12,520건 → ('22년) 21,371건 전년 대비 70.6%↑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국가·지자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등의 노력으로 고위직 참여율이 93.6%로 지난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 대학 내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신규 정보공시('22.10월),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 시효기간 연장(3년→10년)도 추진하였다.
- 지자체 여성폭력 방지 및 안전 증진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설계 시 기존 사업 분석평가 및 취약계층 관점 반영,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시설 간 연계 활성화, 지방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을 제안하기로 논의하였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더 힘써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1.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요

2.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 안건 요약
3.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실적 분석·평가 결과」 안건 요약

담당 부서	권익정책국 권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문선 (02-2100-638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양현순 (02-2100-6306) 정유진 (02-2100-6382)

□ 설치 근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0조

□ 위원 구성 : 위원장, 정부위원, 민간위원

구 분	구 성
위 원 장	여성가족부 장관
정부위원 (15명)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경찰청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12명)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김윤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문유경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바수데비 교사, 박찬걸 충북대학교 교수, 서혜진 변호사, 손수근(학생/ 청년대표),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장, 이한본 변호사,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한민경 경찰대 교수,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가나다 순)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여성폭력 방지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등

【추진배경 및 보완사항】

- 최근 여성 대상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사건 등 중대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신종범죄, 복합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통합 서비스 필요성 증대
- ⇒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촘촘한 피해 지원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및 전달체계 개편, 유관 기관 정책 점검·개선 필요

【추진계획】

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해바라기센터(‘23년 39개소→’24년 41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23년 18개소→’24년 19개소),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23년 25개소→’24년 38개소) 확대
-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운영기관 확대(‘23년 6개소→’24년 17개소),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
-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 지원 안내서 개발·보급
- ‘그루밍’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상 행위로 확대 추진,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 구축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과 지자체 삭제지원 시스템 연계, 국가 간 공조 강화를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② 피해지원 전달체계 효율화

-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23년 2개소→’24년 5개소),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23년 30개소→’24년 55개소) 확대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만20세→만24세)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1인당 250만 원)

③ 폭력방지 기반 강화

- 폭력예방교육 개편 추진,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 추진,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정책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④ (부처협업) 안전한 일상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추진

【추진배경】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근거로 2022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 이행결과를 점검하고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이행력 제고

【분석·평가 결과】

- 총 360개 과제 중 성과목표 100% 이상 달성과제는 289개(80.2%)로 '21년 79.6% 대비 0.6%p 향상
 - 중앙은 137개 과제 중 117개(85.4%), 지방은 172개(77.1%)
 - 입법과제 관련 적극 대응, 지방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주요성과】

①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시범사업 추진,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가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 지표 반영
-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시 3년간 공직 임용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 조치 강화, 목욕실 등에서의 개인영상 촬영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관련 해외 협력 사업자 구글 등 5개에서 틱톡, 텀블러 등 11개로 확대, 성매매 위기 노출 청소년 보호 강화

②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강화

- 국가·지자체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명단 공표, 대학 내 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신규 정보 공시, 군무원인사법 개정으로 성범죄 사건 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③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여성폭력통계 152종 최초로 발표

【현안분석: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방지 및 안전 증진 정책】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과제 중 지자체가 시행주체인 과제 분석 결과,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현황 등 실태조사 추진, 피해자 지원시설 간 연계 활성화, 지방 여폭위 운영 활성화 등 개선 제안 필요